

신제품 지정(NEP)업체에 대한 개선권고서

1. 개선권고 대상자

- 회사명 :
- 대표자 :
- 소재지 :
- 지정번호 : 제 - 호

2. 개선권고 대상 지정신제품

- 지정신제품명 :
- 지정범위 :

3. 개선권고 내용 및 사유

- 개선기간 :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
- 개선권고 사유 :

4. 개선결과 제출

- 개선결과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
(우 369-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인증산업지원과, 전화
043-870-5506)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